

## 정 정 신 고 [보 고]

2016년 2월 18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: 집합투자규약 - JP모간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: 2009년 4월 16일
3. 정정사항:

| 항목           | 정정사유             | 정정 전  | 정정 후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제33조(이익분배)   | 세법개정에 따른 신탁계약 변경 |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0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|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<b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고</b> 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0)보다 적은 <b>경우에도 이익금의 분배를 유보한다.</b><br><b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b><br><b>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/b> |
| 부칙(2016.02.) | 세법개정에 따른 신탁계약 변경 | -   |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등록의 완료 및/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신탁계약 시행 이후 최초로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  |

주) 위 정오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집합투자규약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